



덕성여자대학교



수 신 내부결재

참 조

제 목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관리지침 개정(2022.11.01.)

1. 관련: 산학연구과-003771(시행일자:2021.10.22), 산학연구과-001336(시행일자:2022.05.10), 산학연구과-002478(시행일자:2022.07.26)
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배포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표준매뉴얼 개정(2022.03.) 내용의 반영 및 지난 지침개정 이후 산학협력단의 내부 기안으로 시행되었던 세부 연구비 관리기준등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해 본교 교외연구비관리지침을 정비, 개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정대상: 교외연구비관리지침

나. 개정내용 주요골자

- 산학연구과-001336(시행일자:2022.05.10) 시행사항 반영
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(즉시상각의제),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의거한 연구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중앙구매기준 및 증빙기준 변경
- 산학연구과-002478(시행일자:2022.07.26) 시행사항 반영
연구활동비 항목 내 전문가활용비 지급기준 중 원고료 지급기준 변경 및 보완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사항(2022.03.) 반영
 - 연구활동비 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사용항목 및 기준 마련
 - 연구수당 사용기준 명확화 및 연구수당 **지급 상한 비율 책정근거 변경사항** 반영

변경 전	변경 후
-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,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 의 70%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. 단, 총 연구개발기간(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)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단독 참여하는 경우 100% 지급 가능	-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,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 의 70%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. 단, 총 연구개발기간(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)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단독 참여하는 경우 100% 지급 가능

- 학교법인 덕성학원 및 설치학교 임원·교직원 행동강령(2022.03.25.) 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의무 내용 명시
- 회의비 항목 사용기준 내 '세미나개최비' 사용기준 추가 마련
- 상품권의 원천세 신고의무 기준에 의거, 5만원 초과 상품권 지급 시 원천세 신고의무내용 명시

○ 그외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 등 일반적 지출 보완사항 등 반영

다. 시행일자: 2022.11.01.

붙임.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관리지침 개정(안) 1부. 끝.

결재	직원	10/21 윤혜리	주임	구자필	부단장	조효선	단장	전결10/24 임양미
----	----	--------------	----	-----	-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-

협조

시행 산학연구과-003929(시행일자:2022.10.24)

우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

전화 02-901-8634

팩스

/ <http://www.duksung.ac.kr>

/ hl0930@duksung.ac.kr

/ 공개(호)